

금강대학교 녹음·녹취 제한 지침

제 정 : 2020. 9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·직원의 불필요한 녹음·녹취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교·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본교나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지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녹음”이라 함은 테이프나 판, 영화필름, 전기통신 기계 따위에 소리를 기록하는 행위
2. “녹취”라 함은 대화의 내용을 녹음함. 또는 녹음한 것을 글로 옮겨 기록하는 행위
3. “통신”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.
4. “전기통신”이라 함은 전화·전자우편·회원제정보서비스·모사전송·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·무선·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·문언·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녹음·녹취 행위의 제한

제4조(녹음·녹취 행위의 제한) ① 교·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나 대화 등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행위
2. 제1호의 행위를 돕는 행위
3. 제1호에 따른 녹음이나 녹취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공식기구 및 위원회 등 회의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전체로부터 사전에 동의서(별지 1)를 통해 구성원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·녹취를 할 수 있다. 단, 녹음·녹취를 한 자료는 목적을 달성 한 후 녹음·녹취를 시행한 부서의 장 책임 하에 파기 하여야한다.

제5조(위반 시 제재) ① 본교는 제4조 각 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를 알게 된 경우 직원인사규정 제70조(징계) 제8호에 따라 직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② 본교는 교직원이 녹음 또는 녹취 등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